

<p>적보다 1,002㎡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상이 양호한 학교용지와 체육장으로 이용가능한 공원용지를 상호대체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</p> <p>7. 심사결과 : 원안동의          ○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</p> <p>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938</td> <td style="width: 70%;">제출일자 2001. 8.20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건명 : 도시계획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)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광진구 구의동 59-36일대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	의안 번호	938	제출일자 2001. 8.20
의안 번호	938	제출일자 2001. 8.20		

  

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(㎡)	비 고
	기 정	변 경		
광진구 구의동 59-36 일대	일반주거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3,669.4	

  

<p>4. 주민의견청취결과 : 의견 없음</p> <p>5.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         ○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해제시 공공기여 방안(가로변 쌈지공원 형태의 개발공간 조성 등) 검토요망, 2종일반주거지역 지정에 이견 없음.</p> <p>6.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          ○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가능하다고 판단됨, 다만 아차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이면지역이 저층 주택가이므로 천호대로변 개방감 확보,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경관을 위하여 건축물 배치계획수립 필요</p> <p>7. 검토의견(전문위원)          ○ 본 안건은 광진구 구의동 59-36번지 일대 3,669.4㎡가 '77.8.22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로 결정되어 마포구에서 구의동간을 운행하는 55번 시내버스의 정류장으로 사용하여 오다 자동차정류장 폐지를 위하여 2000.11.15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주거지역 세분화를 동시에 하도록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된 사안으로          ○ 동지역은 지하철5호선 아차산역과 광나루역 사이의 천호대로변에 위치하였으며 주변에는 음식점, 숙박시설 등이 있고 이면은 저층주택가가 있는 곳으로 아차산과 용</p>	<p>마산이 근거리에 있어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, 그리고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해제시 가로변 쌈지공원 형태의 개발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아차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이면지역이 저층주택가이므로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경관을 위하여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시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</p> <p>8. 심사결과 : 원안동의          ○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시설(공원, 화장장)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936</td> <td style="width: 70%;">제출년월일 : 2001. 8.20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청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, 화장장) 결정</p> <p>2. 입안내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	의안 번호	936	제출년월일 : 2001. 8.20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청
의안 번호	936	제출년월일 : 2001. 8.20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청		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					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비 고
신설	공 원	묘지공원	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등 일대	130,320	서울추모공원 건립부지

  

나. 도시계획시설(화장장) 결정			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건축규모			비고
				건폐율	용적률	높이	
신설	화장장	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68번지 일대	39,700	20% 이하	50% 이하	지반고에서 25m 이하	

  

3. 입안사유

- 서울시민의 화장률은 1998년 30% 미만에서 2000년 50%를 초과하였으며 2005년에는 70%에 이르러 1일 69구~97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나 벽제승화원이 확보하고 있는 23기의 화장로로는 처리가 불가하고
- 추모의집 또한 벽제리, 용미리 등 6개소에 63,827위를 갖추고 있으나 이 또한 내년 3월이면 만장되어 더 이상 납골이 불가능한 실정임으로
-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1,000만 서울시민의 복지시설로서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함.

4. 추진경위

- '98.11. : 서울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작업 착수
- '99. 6. : 25개 후보지 선정(서울지역 13개소, 경기지역 12개소)
- '00. 8. : 추모공원건립추진위 발족(서울시·장개협·SK)  
- 학계·종교계·언론계·여성계·시의회·시민단체·전문가 등 32명
- '01.1~7 : 추모공원부지선정심사위 구성·운영
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면 적 (m <sup>2</sup> )			구성비	비 고	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	
계	70,954m <sup>2</sup>	-	70,954m <sup>2</sup>	100%		
주거지역	일반주거지역	70,954m <sup>2</sup>	감70,954m <sup>2</sup>	-		
	제1종일반주거지역	-	증 1,564m <sup>2</sup>	1,564m <sup>2</sup>	2.2%	도로부분
	준주거지역	-	증 15,160m <sup>2</sup>	15,160m <sup>2</sup>	21.4%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-	증 54,230m <sup>2</sup>	54,230m <sup>2</sup>	76.4%	

  

3. 입안사유 (계속)

- 각 분야 전문가, 각계 시민대표 등 18명
- '01.3~5 : 후보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(3회)
- '01. 7. 5 :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에서 2개소 추천  
-서초구 원지동, 강서구 오곡동
- '01. 7. 9 : 원지동을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
- '01. 8.10 : 도시계획안 공람공고

5. 참고사항
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: 이견 없음
- 주민의견청취 결과 : 별첨 참조
- 장사법 개정(2001. 1 시행) :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장묘시설 확보 의무화

도시계획 결정에 의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894	제출년월일 : 2001. 6. 9
	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

2. 입안내용  
가. 용도지역